

『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1년 6월 24일

나. 발 의 자 : 김낙관, 강승수, 권재욱, 김영길, 김재우, 김춘남,
박교상, 송용자, 안장환, 이선우, 이지연, 장미경,
장세구, 최경동, 홍난이 의원(15인)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7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7월 19일

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김 낙 관 의원

나. 제안이유

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지역에 밀집되어
특성화된 상가지역을 발굴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거리 조성
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
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, 안 제2조)
-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 (안 제3조, 안 제4조)
-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- 특화거리 지정 기준 및 신청·취소 (안 제6조 ~ 안 제8조)
- 지원사업 (안 제9조)
- 특화거리 사업평가 (안 제10조)
-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1조 ~ 안 제16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유통산업발전법」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 6. 28. ~ 7. 5.)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변 상 용

- 본 「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」은,
 - 음식, 문화 등 밀집되어 있는 주요 상가 지역을 발굴하여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써,
 - 특화거리 지정 시 지역상권과 트렌드를 정확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지정하여 특색 있는 상권이 형성된다면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유동 인구를 이끌어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